

남원시 고시 제2012 - 68호

노암 제3농공단지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

노암 제3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노암 제3농공단지계획을 승인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,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2011년5월20일(남원시 고시 제2011-32호) 고시하였으나,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지번 및 면적 증·감 소유자 주소, 성명 등 변경내용과 묘지 부근에 누락된 물건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2년 9월 7일

남 원 시 장

1. 농공단지 명칭, 위치, 면적

- 명칭 : 노암 제3농공단지
- 위치 : 남원시 노암동 산48번지 일원
- 면적 : 324,819m²

2. 농공단지의 지정목적

-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, 중소기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현

3.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

- 사업시행자 성명 : 남원시장
- 사업시행자 주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)

4. 농공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

- 개발기간 : 2009년 ~ 2013년
- 개발방법 : 공영개발

5. 세부 토지조서(변경)

일 련 번 호	토지소재지			지 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변경		증·감	소유자			
	시	동	지번				지번	편입면적 (㎡)		주소		성명	
										당초	변경	당초	변경
45	남원	노암	129	전	261	261	129	130.5		노암동 667	노암동 667	김영기 외1인	김영기
				전			129	130.5			금동75		김일생
64	남원	노암	701-3	답	123	108	701-7	107	-1		노암동 689-1	남원시	박주봉
79	남원	노암	706-2	도	56	13	706-8	11	-2	노암동 676		김영묵	
80	남원	노암	706-5	도	205	17	706-10	17		노암동 676		김영묵	
89	남원	노암	721-1	도	69	4	721-4	4		노암동 648		박병주	
127	남원	노암	757-1	전	19	19	757-1	19		노암동 696	노암동 695	홍만룡	방동기
170	남원	노암	산48	임	42,345	42,436	산48-5	42,147	-289	남원시 쌍교동 75		남원양 씨시모 동종중	
178	남원	노암	산64	임	12,893	56	산64-1	53	-3	구리시 인 창동640-1 아름마을 엘지아파 트201-1303		박종철	

6. 물건조서(누락분)

일련 번호	묘지 번호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 량	소유자	
							주 소	성명
계			2필지					
1	118	남원시 노암동	산35	둘레석	사각	2식	전주시 인후동1 가 577-23	서재빈
2	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3		남원시 노암동	“	갓비석		1식		
4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5		남원시 노암동	“	석등		1식		
6		남원시 노암동	“	화병		2식		
7	123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기		
8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9		남원시 노암동	“	석축	경치석 (7*1)	7m		
10		남원시 노암동	“	망주석		2식		
11		남원시 노암동	“	편백		24주		
12	125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13		남원시 노암동	“	망주석		2식		
14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15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16		남원시 노암동	“	옥향		2주		
17	128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18		남원시 노암동	“	둘레석	사각	1식		
19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20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21	130	남원시 노암동	“	석축	자연석 (H=1,L=7)	7m		
22	28	남원시 노암동	산48-5	상석		1식	남원시 쌍교동 75	남원양씨 시묘동종중
23		남원시 노암동	“	산신석		1식		
24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25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26	29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27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28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29	30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30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
일련 번호	묘지 번호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 량	소유자	
							주 소	성명
31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32	31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33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34		남원시 노암동	“	비석		1식		
35	33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36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37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38		남원시 노암동	“	축백	9	주		
39	41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40		남원시 노암동	“	둘레석	사각	2식		
41		남원시 노암동	“	망주석		2식		
42	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43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44		남원시 노암동	“	산신석		1식		
45	43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46		남원시 노암동	“	둘레석	사각	2식		
47	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48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49	46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50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51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52	49	남원시 노암동	“	비석		1식		
53		남원시 노암동	“	둘레석	사각	1식		
54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55	51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56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57		남원시 노암동	“	둘레석	원형	2식		
58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59	53	남원시 노암동	“	상석		1식		
60		남원시 노암동	“	띠석		1식		
61		남원시 노암동	“	둘레석	원형	2식		
62		남원시 노암동	“	향춧대		1식		
63		남원시 노암동	“	향나무		2주		
64		남원시 노암동	“	산신석		1식		
65		남원시 노암동	“	석축	경치석 (H=1)	17m		

7. 기타사항

- 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 (☎063-620-64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원시 고시 제2012-70호

남원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남원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(☎063-620-6452)와 교통과(☎063-620-6578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2012년 9월 7일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가. 종 류 : 남원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/주차장)사업
 - 나. 명 칭 : 법원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2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남원시 죽향동 199-2 일원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 - 가. 면 적 : 1,860㎡
 - 나. 규 모 : 주차대수 51대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남원시장(교통과)
 - 나. 주 소 :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)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2012. 8. ~ 2013. 6. 30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(따로붙임)
7. 주요 사업내용 “안”

- 주차면적 : 1,521㎡	- 녹지 : 339㎡
- 자전거보관대 : 1식	- 아스콘포장 : 13.87a
8.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도서 : 실음생략. 끝.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

1. 토지조서

연번	토지소재지		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권리자		비고
	시	읍면	동리					주소	성명	권리내용	성명	
1	남원		죽향	199-2	대	374	374	이백면 효기1길 40-8	오애순	남원농업협동조합	남원시 충정로 100 (향교동)	근저당권 설정
2	남원		죽향	200-3	대	145	145	주천면 웅치윗길 39	이은성			
3	남원		죽향	201-1	대	86	86	주천면 웅치윗길 39	이은성			
4	남원		죽향	202-1	대	331	246	남원시 용성로 68-8(죽향동)	김종구			
5	남원		죽향	202-2	대	602	599	남원시 비석길 113	이대석			
6	남원		죽향	218	대	410	410	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94(효자동1가, 주공3단지아파트 125-301)	이선재	온누리신용협동조합	남원시 봉맞길 105 (향교동)	근저당권 설정

2. 지장물 조서

연번	토지소재지		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·면적	단위	소유자		비고
	시	읍면	동리						주소	성명	
1	남원		죽향	199-2	창고(1층)	블럭조/기와	31.2	㎡	이백면 효기1길 40-8	오애순	
					상가(1층)	블럭조/합석판넬	23.4	㎡			
					상가(1층)	블럭조/슬레이트	95.3	㎡			
					상가(1층)	블럭조/기와판넬	55.0	㎡			
					주택(1층)	블럭조/기와판넬	12.7	㎡			
2	남원		죽향	200-3 201-1	주택(1층)	블럭조/합석	61.8	㎡	주천면 웅치윗길 39	이은성	
					주택(1층)	블럭조/슬레이트	84.7	㎡			
3	남원		죽향	202-1	주택(1층)	벽돌조/슬레이트	97.5	㎡	남원시 용성로 68-8 (죽향동)	김종구	
					창고(1층)	조립식	22.8	㎡			
					대문	알미늄	6.2	식			
					담장	블럭조	24.6	주			
					곰솔		1	주			
					석류		3	주			
					감나무		1	주			
4	남원		죽향	202-2	주택(1층)	조립식/슬라브	116.8	㎡	남원시 용성로 62-2 (죽향동)	이대석	
					보일러실(1층)	조립식/슬라브	9.8	㎡			
					창고(1층)	조립식/슬라브	16.7	㎡			
					대문	철제	4.4	주			
					곰솔		17	주			
					철쭉		30	주			
					석류		2	주			
5	남원		죽향	218	주택(1층)	블록조/기와	91.6	㎡	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94(효자동1가, 주공3단지아파트 125-301)	이선재	
					창고(1층)	블럭조/슬레이트	8.2	㎡			
					화장실(1층)	블럭조/슬레이트	3.4	㎡			

남원시보건소공고 제 2012 - 22호

『남원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』 개정안 입법예고

『남원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』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09. 07.
남 원 시 장

1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가. 출산지원금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상향조정 지원
- 나. 국내여성 셋째아이상, 이주여성 첫째아이상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급

2. 주요내용

- 가. 셋째아이상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변경(안 별표)
- 나. 산후조리지원금 추가지원(안 제3조제4항, 별표)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그 사유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590-040 남원시 요천로 2850(조산동)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
(전화 : 063.620.7940~7942 FAX : 063-631-5933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4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(전화 : 063.620.7940~794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12. 8.
 제출자: 남원시장
 제안설명자: 보건소장

1. 개정이유

출산지원금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 상향조정 지원하고, 국내여성
 과 이주여성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출산·고령화 사회문제를 해
 결하고 인구증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변경(안 별표)
 - 당초 10단계로 구분된 지원금을 ⇒ 3단계로 줄여 셋째아 이상부터
3,000,000원으로 통일 지원
- 나. 산후조리지원금 추가 지원(안 제3조제4항, 별표)
 - 당초 출산지원금만 지급하던 것을 산후조리지원금을 추가 지급 하도록
함
 - 산후조리지원금 지급(국내여성은 셋째아부터, 이주여성은 첫째아부터 지
원하되, 지원금은 500,000원으로 동일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12. 9. 7 . ~ 2012. 9. 27 .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2012. 8. 27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미만”을 “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출산장려금”이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말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장려금”을 “출산지원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원대상”을 “출산지원금 지원대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의 산모(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에 한하여 지원하며, 이주여성의 경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되, 거주기간이나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첫째아부터 지원한다.

제5조 중 “별표기준에 의거”를 “별표기준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장려금”을 “출산장려금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제3호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장려금”을 “출산장려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장려금”을 “출산장려금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”을 “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”으로, “장려금”을 “출산장려금”으로 한다.

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1. 출산지원금

구 분	지 원 금	비 고
첫째아	500,000	
둘째아	1,000,000	
셋째아 이상	3,000,000	

2. 산후조리지원금

구 분	지 원 금	비 고
셋째아 이상 (국내 여성)	500,000	
첫째아 이상 (이주 여성)	500,000	

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
가정이 된다.

- 1.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,
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
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
로써 신생아 부모중 1인과 함
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
경우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5조(지원기준) 출산장려금은 별
표기준에 의거 지원한다.

제6조(지원신청 등) ① 장려금 지
원 신청인(이하 신청인이라 한
다)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
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2호의
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
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
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.

항에도 -----
-----.

- 1. -----

----- 1명-----

--

2. ~ 3. (생략)

④ 산후조리지원금은 남원시에
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
한 셋째아 이상의 산모(분만 후
6개월 미만인 여성)에 한하여
지원하며, 이주여성의 경우 남
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되,
거주기간이나 출생순위에 관계
없이 첫째아부터 지원한다.

제5조(지원기준) ----- 별
표기준에 따라 -----.

제6조(지원신청 등) ① 출산장려
금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

② 읍·면·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려금 신청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신청서를 20일까지,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인은 25일까지,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인은 송부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8조(환수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.

[별표]

② (생략)

제7조(지원절차 등) ① (생략)

- 1. ~ 2. (생략)
- 3. 제3조에 따른 -----

② ----- 제1항에 따라 -----

----- 출산장려금 -----

③ -----
출산장려금 -----

제8조(환수조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-----
----- 출산장려금 -----

[별표]

출산장려금 지원 기준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지 원 금	비 고
첫째 아	500,000	
둘째 아	1,000,000	
셋째 아	2,000,000	
넷째 아	4,000,000	
다섯째 아	10,000,000	
여섯째 아	13,000,000	
일곱째 아	16,000,000	
여덟째 아	19,000,000	
아홉째 아	22,000,000	
열 번째 아 이상	35,000,000	

※ 단, 다섯째 아 이상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50%는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지급 하고 나머 지 50%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 하며, 이 기간동안 제4조 제1호에 의한 제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출산장려금 지원 기준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1. 출산지원금

구 분	지 원 금	비 고
첫째아	500,000	
둘째아	1,000,000	
셋째아 이상	3,000,000	

2. 산후조리지원금

구 분	지 원 금	비 고
셋째아 이상 (국내 여성)	500,000	
첫째아 이상 (이주 여성)	500,000	